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 제1항	100	200	500
나.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	법 제33조 제1항	500		
다. 법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1)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	법 제33조 제2항	100		

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
2)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 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 우		200
3)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 이 3개월 이상인 경우		300